

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01. 12. 1.

개정 : 2013. 5. 15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의 취지에 따라, 인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내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
②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「형법」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.

③ “성차별”이라 함은 성별(性別)에 따라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「정관」 및 「학칙」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남녀고용평등 및 남녀차별 금지

제4조 (남녀고용평등 및 남녀차별 금지) 본 대학교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.

제3장 예 방

제5조 (예방) ① 본 대학교는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, 성폭력 및 성차별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② 본 대학교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, 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

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.

제4장 성평등 상담실

제6조 (설치)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, 홍보, 피해신고·접수, 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하여 본 대학교 학생지원처 산하에 성평등 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7조 (업무) 상담실은 제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의 예방 교육 및 홍보
2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피해의 신고·접수, 상담, 기록 및 보고
3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
4.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9조까지, 「형법」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거한 수사기관에의 신고
5. 기타 상담실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

제8조 (구성) ① 상담실을 대표하고 상담실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담실장을 둔다. 상담실장은 학생지원처장이 겸임한다.

② 상담실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상담요원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9조 (성폭력피해상담소) 본 대학교는 상담실을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신고, 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성평등 위원회

제10조 (설치) ①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에 대한 정책심의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평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의 형태로 구성한다.

1. 정책심의인 때 : 위원장, 부위원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각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인, 직원 3인, 학생 3인
2. 피해자가 교원인 때 : 위원장, 부위원장, 교무처장,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인
3. 피해자가 직원인 때 : 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처장,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인 과 직원 3인
4. 피해자가 학생인 때 : 위원장, 부위원장,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인과 학생 3인

③ 임명직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

- ⑤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관련 사건조사 및 그 결정에 관한 사항
- 3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관련 사건에 대한 중재와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과 관련된 중요사항

제11조의2 (조사위원회 구성) ① 성평등위원장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위원회(이하 “조사위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- ② 조사위 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조사위 위원장은 4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조사를 위한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④ 조사위는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2조 (회의)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제6장 처리절차 및 징계

제13조 (신고) ① 상담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② 상담실장은 신고된 사건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조사·심의·중재·조정·의결)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호에 따라 보고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② <삭 제>
- ③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가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가해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·중재·조정·의결한다.
-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 각 호의 이행방법과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- 1. 가해자의 공개적 사과 혹은 비공개 사과 및 합의문 작성
- 2. 가해자의 교육 및 봉사 이수
- 3.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비 및 치료비 제공

4. 기타 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

⑥ 위원회는 신속하게 사건의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, 신고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한다.

1.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
2.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5조 (징계 발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등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,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신분예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징계를 위한 심의를 요구한다.

1. 교원 : 교원인사위원회
2. 직원 : 직원인사위원회
3. 학생 : 학생상벌위원회

② 위원회는 사건처리 결과를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장 피해자 보호

제16조 (피해자 보호 원칙)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 사건을 조사·심의·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7조 (피해자 권리와 비밀보장) ①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사건의 신고,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.

③ 사건의 신고,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는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유언비어 및 진행내용을 유포할 수 없다.

제8장 보 칙

제18조 (기타사항)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(내부결재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부총장 명칭변경)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 2. 24>

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 12. 18>

이 개정규정(제2조, 제7조제4호 개정 및 법령명칭 변경)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5. 15>

이 개정규정(제6조, 제10조,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4조 및 제15조)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